

2013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

투자기관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,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“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”의 세부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2. 1.
특허청장

I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, 이를 투자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

II. 신청자격

- 투자기관* 단독신청 또는
투자기관 및 중소기업** (투자기관이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) 공동신청

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,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, 기업, 엔젤클럽, 해외투자자 등을 포함

**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임

III. 지원내용

-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%를 지원(VAT 별도)
 - *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(10%)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,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(90%)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
 - *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.5백만원 한도임
 - * 전체 기술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(VAT)는 신청인 부담

□ 기술평가 내용

-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^{*} 별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모델을 기초로 하여, 투자기관이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“맞춤형”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

* (평가예시 1) 수익접근법(현금흐름할인법) 등의 평가모형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을 위한 평가 가능

[특허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]

항목	평가내용
기술성	① 기술개요
	② 기술환경분석
	③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
권리성	① 권리 안정성
	② 권리범위분석
	③ 사업 연관성
시장성	① 시장개요
	② 시장환경분석
	③ 시장경쟁분석
사업성	① 사업화 기반 역량
	② 제품 경쟁력
	③ 매출 추정 및 수익분석
가치평가	① 특허기술의 활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가치(NPV)를 결정하고,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기여율을 결정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

* (평가예시 2) 투자결정시 주된 고려사항인 **지재권 경쟁력 분석**을 중심으로 평가 가능

[지재권 경쟁력 분석 평가항목]

항목	평가내용
기술 경쟁성	① 차별성
	② 모방용이성(기술의 난이도)
	③ 회피비비용(회피설계비용)
	④ 대체기술
	⑤ 경쟁자에 미치는 영향
지재권 보호 안정성	① 한국, 미국, 일본, EU 관련 선행기술 조사 (특허문헌 외 논문 등 기술문헌 포함)
	② 보유 지재권의 권리무효 가능성 (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른 무효여부 판단)
	③ 지재권 권리범위의 적정성
실시기술의 他 지재권 침해 가능성	① 실시기술의 he 지재권 침해여부 조사
	② 침해 회피 가능성(회피설계, 크로스라이센싱 등을 통한 침해 회피 가능성)

* 기술평가는 특허청 지정 10개 “발명의 평가기관”에서 수행

한국발명진흥회, 기술보증기금, 한국산업은행, 한국과학기술정보(연),
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(연)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(연),
한국화학융합시험(연)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농업기술실용화재단

IV. 사업 진행 절차

<p>대상기업 예비선정 후 지원신청(수시)</p> <p>- 투자기관 -</p>	<p>투자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업 예비선정 후 평가지원 신청</p> <p>..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투자기관에서 투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의 필요성 검토 후 자체 예비선정* 평가요청 전 평가기관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간에 대한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제출 (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 첨부)* 신청 명의는 투자기관 및 대상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또는 투자기관 단독 신청
--	--



<p>지원대상 선정(수시)</p> <p>- 한국발명진흥회 -</p>	<p>관리기관에서 방식 심사 후 결격사유 없는 경우 지원 선정</p> <p>..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특허기술 보유기업, 중소기업 등 기본 자격요건 및 평가견적 금액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(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)* 신청접수에 따라 수시 선정을 진행하며, 기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착순 지원 선정
--	--



<p>특허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[4주~12주]</p> <p>- 발명의 평가기관 -</p>	<p>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기관에 제공</p> <p>..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신청시 평가계획서에 기재한 평가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하되, 4주 내지 12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*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부담금(10%)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,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(90%)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평가기관에 제공* <u>전체 평가소요 금액에 대한 부가세(VAT)</u>는 신청인 부담
--	---



<p>투자심의 활용결과 보고</p> <p>- 투자기관 -</p> <p>(투자확인 서류제출)</p>	<p>투자심의 활용결과(투자여부, 투자금액 등)를 관리기관에 보고</p> <p>....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투자기관 투자심의시 기술평가보고서를 레퍼런스로 활용* 투자심의 활용 만족도, 투자여부, 투자금액 등에 대한 활용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*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
---	--

V. 신청접수

- 신청접수기간 : 2013. 02. 01. 부터 연중 수시 접수 (예산 소진시 까지)
- 신청방법
 - 신청서,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를 작성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제출
 - * 온라인 제출 :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(PDF 또는 JPG 파일)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
pid@kipa.org (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)
 - * 오프라인 제출 : 아래 주소로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(135-980)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-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
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

VI. 문의처

-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
 - 정정숙 과장(02-3459-2938), 주한중 전문위원(02-3459-2945)
-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

평가기관	문의 전화	평가기관	문의전화
한국발명진흥회 (특허평가거래팀)	02-3459-2854	기술보증기금	032-830-5716
한국산업은행	02-787-4079	한국과학기술정보(연)	02-3299-6033
한국산업기술진흥원	02-6009-4307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(연)	02-3415-8896
한국기계전자시험(연)	031-428-3811	한국화학융합시험(연)	02-2164-0047
한국산업기술시험원	02-860-1378	농업기술실용화재단	031-8012-7262